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96 발의연월일: 2022. 3. 17.

발 의 자: 강민국·박성민·박 진

권은희 • 윤주경 • 태영호

정동만ㆍ이 영ㆍ이달곤

안병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위패와함께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음에도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는 안치가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함께 배우자의 위패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제5조제4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법에 따른 내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군무원 등이 반란·이적·살인 등의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 신분상의 이유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 각 목"으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군형법」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9조의 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	③
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	
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u>수</u> 있다.	<u>수 있으며, 배우자</u>
	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
	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
	<u>로 안치할 수</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u>	3. <u>다음 각 목</u>
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	 	_
 	 	 	 -	-	 	_
 	 	 	 		 	_
 	 	 	 		 	_
 	 	 	 		 	_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군형법」제5조부터 제6
 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
 범, 제8조의 죄, 제11조부
 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9조의 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 제92조부
 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
 는 그 미수범, 제92조의6부
 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